

결정규칙에 따른 모의배심단 평결의 안정성*

이은로 박광배⁺
충북대학교

집단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이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의 배심단에서 내린 평결의 안정성이 서로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평결의 안정성이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로서 정확한 평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640 명의 대학생들이 8인 배심단 80 개에 모의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살인사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규칙 혹은 다수결규칙으로 평의하고 평결을 도출하였다. 재판 자료는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대하여 강한 증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무죄 증거가 강한 경우,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가 모호한 경우의 4 가지 증거상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정보엔트로피 개념으로 파악한 평결의 안정성이 다수결규칙보다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만장일치규칙에서 배심단들이 더 안정적인 평결을 내린 이유는 특히 사건의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호한 조건에서 다수결규칙에 비해 이들의 평결이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상태와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용계약(leniency contract)’ 이론(Crano & Chen, 1998) 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원들이 평의 동안 소수의견에 더 개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민참여재판에 가지는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결정규칙, 배심단, 평결의 안정성

특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성원들의 개인적인 의견 분포로부터 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조합되는 과정에 대해 Davis(1973)는 사회적 결정스키마 이론(Social Decision Scheme)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집단의 결정을 위한 절차규범 혹은 스키마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 내부로부터 암묵적으로 생성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집단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생성된 결정규칙(decision scheme)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공식적 규칙(decision rule) 보다 집단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Davis, Kerr, Atkin, Holt, & Meek, 1975; Kerr & MacCoun, 1985; Kerr, MacCoun, & Kramer, 1996; Penrod & Hastie, 1979). 사회적 결정스키마 모형으로 검증한 배심단들의 자료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규칙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하도록 요구되어도, 평결을 위해 평의를 하는 동안 배심단내에서 암묵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다수결규칙이 비공식적으로 생성되고, 배심단의 실제 평결은 암묵적으로 생성된 비공식적인 다수결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결정스키마 모형에서는 예를 들어 배심단의 초기 투표에서 표명된 배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321-H00016).

⁺ 교신저자 : 박광배,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번지, 충북대학교 사회대학 심리학과, 전화 : 043) 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원들의 유죄 : 무죄 의견 분포가 7 : 5였던 배심단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유죄결정을 내리고 6 : 6이었던 배심단들 중에서는 50%가 유죄결정을 내렸고, 5 : 7이었던 배심단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무죄결정을 내렸다면 이 자료로부터 배심단들이 결정을 내릴 때 실제로 적용한 암묵적 결정규칙은 단순다수결이라고 간주한다. 즉 이 모형에서는 외부에서(예컨대 사법제도의 절차로서) 공식적으로 배심단에 부과된 결정규칙과 무관하게 배심원들이 실제 평결을 내린 결정규칙에 주목하여, 집단 성원들이 공유한 집단 내재적 규범으로서 암묵적 결정 스키마를 파악한다 (Penrod & Hastie, 1979).

반면,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에 의해 개인의 내재화된 규범이 억제되고, 개인의 행동이 내부규범보다 외부규범에 더 부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Milgram(1963, 1974)은 인간의 복종행동이 상황에 의해 부여되는 외부규범(권위)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tanford 대학에서 행해진 Zimbardo(1972)의 유명한 감옥실험 역시 개인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직규범 혹은 규칙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ilgram과 Zimbardo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제도 혹은 공식적 규범에 의해 인간행동이 변화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인간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Hofling, Brotzman, Dalrymple, Graves, & Pierce, 1966)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규범은 그 개인들의 행동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집단의 행동(behavior of a group)에 영향을 준다(Davis, Holt, Spitzer, & Stasser, 1981; Postems, Spears, & Cihangir, 2001). 특히, 특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행동이 집단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과 규칙에 의해 달라지는 양상이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배심단의 결정규칙을 둘러싼 법적, 실증적 논쟁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에서 최종 선택을 위해 요구되는 성원들의 동의 혹은 합의 정도가 결정규칙이다(Baron & Kerr, 2003). 영미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배심제도를 운용해온 나라들에서는 배심단이 만장일치 규칙으로 결정을 내리는 전통이 14세기 중반 이래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배심원들이 동의한 유무죄 의견 비율이

10 : 2 혹은 9 : 3 등일 때 다수의 판단으로 최종결정을 내리는 가중다수결규칙(super-majority rule)이 일부 나라들, 일부 주 혹은 일부 재판유형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Vidmar, 2000; 이은로, 박광배 2006).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도입된 한국에서는 배심원들이 상당한 평의를 하였음에도 배심원 전원이 하나의 평결에 모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다수결규칙 (simple-majority rule)으로 최종평결을 정한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2007). 이는 영국의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두 시간 이상 평의하여도 전원이 일치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가중다수결 규칙으로 평결을 내리도록 한 것과 유사한 방식인데 영국에서는 1998년에 전체 형사사건 중 20%에서 배심단이 다수결에 의한 평결을 도출하였다(Lloyd-Bostock & Thomas, 2000).

배심단의 결정규칙에 대한 현장연구와 실험연구들에 의하면, 다수결규칙에 비교해서 만장일치규칙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배심평의의 질이 달라진다. 만장일치규칙의 배심원들이 더 철저하고 활발하게 평의를 하고, 소수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하며, 증거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배심원들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정확성과 결정 과정의 질에 대하여 다수결규칙의 배심원들보다 더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Abramson, 1994; Devine, Clayton, Dunford, Seying, & Pryce, 2001; Diamond, Rose, & Murphy, 2006; Hastie, Penrod, & Pennington, 1983; Kameda, 1991; Saks, 1997).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사법제도의 상징적 정당성 측면에서 만장일치규칙이 장점을 갖는데(Bove III, 2008), 특히 결정에 대한 확신은 결정의 정당성으로 연결되어 인식된다(Diamond et al., 2006). 여기에서 정당성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는 재판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지역사회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기준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이다. Abramson(1994)도 만장일치규칙이 배심평결의 정당성을 이루는 중심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는데, 일반 시민들 역시 형사사건에서 배심평결의 만장일치 과정이 다수결규칙에 의한 결정과정보다 더 공정한 것으로 인식한다(MacCoun & Tyler, 1988).

반면에, 만장일치규칙의 최대의 단점은 배심단이 명확한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소위 ‘평결불능(hung jury)’의 상태에 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2년 미국 대법원에서 최초로 가중다수결 평결이 미국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

정을 내렸을 때 9인의 판사들 사이에 5 : 4 비율로 찬반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때 다수의견이었던 Powell 판사는 만장일치규칙을 완화함으로써 매수되거나 비합리적인 배심원 때문에 발생하는 평결불능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만장일치를 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Diamona et al., 2006; Johnson v. Louisiana, 1972). 만장일치규칙에 의해 평결불능 배심단이 발생하는 정도는 나라별, 지역별이나 재판유형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체 배심재판 중 약 5%(Hans, Hannaford-Ator, Mott, & Munsterman, 2003; Kalven & Zeisel, 1966;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02; Vidmar, 2000) 의 발생비율을 보인다. 이런 평결불능 배심단 중 상당수에서는 다수결규칙을 적용한다면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Kalven & Zeisel, 1966), 만장일치규칙을 완화하면 재판을 다시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Glasser(1997) 는 배심재판 평결규칙에 다수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의회나 선거에서와 같이 다수결규칙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다수결규칙으로 평결을 내리더라도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평의하여 확신에 도달했을 경우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다수결 규칙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심재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과 같이, 동일한 헌법에 기초한 하나의 사법제도에서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에 의한 배심평결이 이중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에는 앞서 소개한 Davis(1973)의 사회적 결정스키마 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결정규칙이 배심단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Baron & Kerr, 2003). 본 연구는 이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결정규칙에 따라 배심단의 결정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법적 판단에서 배심단 결정의 정확성에 대하여 중요한 전제가 되는 최종평결의 ‘안정성’(stability)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 만약 달라진다면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안정성’이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

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기 다른 결정규칙이 적용되었을 때 배심단들의 평결분포가 안정성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여, 제도규범이 달라짐에 따라 집단의 수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인이 한시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는 배심재판 혹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정규칙과 평결의 안정성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평결의 안정성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실제 재판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같은 사건을 다른 배심단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결의 안정성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배심단 결정의 정확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결정규칙에 따라 평결의 정확성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경험적 증거가 없지만, 다수결 규칙에 비해 만장일치 규칙이 지니는 분명한 가치는 평의의 특성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Bove III, 2008). 즉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이 각각 적용될 때 배심단의 평의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이 나타난다. 다수결규칙에서 배심원들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족수만큼의 합의가 이뤄지면 평의를 종결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들 보다 결정을 더 빨리 도출한다(Davis et al., 1975; Foss, 1981; Hastie et al., 1983; MacCoun, 1989; Nemeth, 1977). 또한 다수결규칙의 배심원들은 투표의 회수가 더 적고(Davis et al., 1975; Kerr, Atkin, Stasser, Meek, Holt, & Davis, 1976), 증거에 대해 더 짧게 토론하고 덜 철저하게 논의한다(Hans, Hannaford-Agor, Mott, & Munsterman, 2003). 또한 증거에 관한 논의보다는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NSW Law Reform Commission, 2005), 증거에 대한 기억이 더 빈약하다(MacCoun, 1989). 반면에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에서 배심원들은 재판 중에 제시된 증거를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오랜 시간동안 평의하며 더 진지하고 확고한 평의를 한다(Kaplan & Miller, 1987; Miller, 1985; Nemeth, 1977). 또한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은 다

수결규칙의 배심단에 비해 투표를 더 여러 번 하고, 소수 파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더 많이 표현한다(Hastie et al., 1983).

그런데 만장일치 규칙에서는 다수의 배심원들이 하나의 평결안에 동의할 경우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소수의 배심원에게 결정을 바꾸라고 강요하게 되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다수결 규칙에서는 생각이 다른 배심원들을 확신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서 만장일치 규칙의 단점인 배심단 내의 강요 현상에서 자유롭다. 그런 점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줄임으로써 다수결 규칙의 배심단에서 갈등을 억압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적으로 관용함으로써 더 열린 사회로 이끌어갈 수도 할 수 있다는(Bove III, 2008; Leib, 2006)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다수결 규칙의 배심평의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한 진지하고도 확고한 주장과는 구별되는 형식적인 대화의 예들이 관찰된다(Diamond et al., 2006; Johnson v. Louisiana, 1972). 더구나 다수결 규칙에서 소수 배심원들의 의견을 열린 포용성으로 인정한다하여도 그 이후 도출되는 최종평결은 소수의 반대 의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다수의견이 전체 배심단의 결정이 된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소수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채 결정된 다수결 평결은 소수의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쟁하여 서로의 동의를 이룬 만장일치 결정에 비해 더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정규칙이 배심평의의 질과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만장일치규칙 조건에서 배심단들의 평결이 다수결규칙 조건에서보다 더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만장일치 규칙의 조건에서 배심원들이 증거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며 진지하고 확고한 평의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다수결 규칙의 배심단들에 비해 같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각기 다른 배심단의 평결이 일치할 확률이 더 높다. 증거가 상세하게 검토되고 전체 배심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는 과정에서 집단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편견이나 미성숙한 판단의 확률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배심단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평결을 내리는 변산성이 낮아지고, 여러 배심단들이 사건의 증거 상태를 반영하는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공식적 집단규범으로 제시된 결정규칙은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규칙의 영향을 평결의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배심단의 의사결정에서 궁극적인 관심은 배심단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가에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DNA 검사가 가능한 경우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이 정확한 평결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법적 판단에서 정확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결의 안정성에 주목하였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배심단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인 평결의 안정성은 심리측정 및 검사에서의 평정자간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평결의 정확성에 대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규칙에 의해서 평결의 정확성이 달라지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평결의 안정성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평결의 정확성에 대한 결정규칙의 영향 또한 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결정규칙이 배심단 결정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만장일치 규칙의 조건에서 배심원들이 증거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진지하고 확고한 평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약 결정규칙에 따라 배심단 평결의 안정성이 달라지는 경우, 만장일치조건과 다수결 조건에서 최종적인 평결이 증거상태와 합치하는 정도, 그리고 평의 동안 서로 다른 의견을 고려하는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평결의 안정성

평결의 안정성은 같은 재판에 대하여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판결을 하는 정도를 말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크면 평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배심단들이 도출한 평결의 안정성은 그 배심단들의 평결이 함축하는 정보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Shannon, 1949) 개념에 기초하여 지수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10개의 모의배심단이

각각 평결을 도출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A 조건에서는 1개 배심단이 무죄평결을 하고(9개의 배심단이 유죄평결), B 조건에서는 5개의 배심단이 무죄평결을 하였다면(5개의 배심단이 유죄평결), A 조건에서 배심단들 사이의 평결이 더 일관되고 높은 예측가능성을 가지며, 따라서 평결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A 조건에서보다 B 조건에서 정보엔트로피가 더 높는데, 정보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개념 혹은 예측가능성의 역개념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혹은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 = \frac{\exp(-\sum_{i=1}^S p_i \ln(p_i))}{S}$$

위의 정보엔트로피 수식에서 S 는 재판 사건에서 도출될 수 있는 평결안(예를 들면, 무죄평결과 유죄평결)의 수이고, $p_1, p_2, p_3, p_4, \dots, p_s$ 는 총 평결 수에 대한 각 평결안의 비율이다. $\ln(\)$ 자연로그이고 \exp 는 자연상수 e 의 승수를 간략히 표기한 것이다(예, $\exp(X) = e^X$). 정보엔트로피 E 는 배심단들의 최종 평결이 불안정할수록, 즉 배심단마다 평결이 다른 정도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앞서 예시한 조건 A(무죄평결수와 유죄평결수의 비례가 1 : 9 인 경우)에서 평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정보엔트로피는 $E = 0.69$ 이고, B의 경우(무죄평결수와 유죄평결수의 비례가 5 : 5인 경우)는 $E = 1.00$ 이다.

평결규칙에 따라서 평결의 안정성이 달라진다면, 그 가능한 이유는 만장일치 규칙의 조건에서 배심원들이 증거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배심단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배심원들을 포함하여 배심원 전체가 동의하는 유무죄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의 가치와 증명력에 대해 철저히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종 평결이 증거의 속성과 질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증거들을 검토하는 각기 다른 배심단의 최종 평결이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배심단에서 평의동안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경우에 사건의 증거와 쟁점에 대하여 더 다양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집단 상황에서 다수와 배심원들이 범할 수도 있는 오류나 편견이 수정되고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만장일치가 집단의 외

부에서 규범으로 부과될 때에는 집단내의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에 설득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에는 집단 내에서 관용 계약(leniency contract)으로 불리는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관용 계약이란 다수집단의 성원들이 단지 자신들이 공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소수집단의 성원들에게 할 말을 다 하도록 용인하고, 용인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소수집단의 영향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Crano & Chen, 1998). 다수결규칙이 적용될 때보다 만장일치규칙이 적용될 때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을 설득해야 하는 압력을 더 크게 경험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만장일치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용 계약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관용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모든 신념들을 펼쳐 놓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집단결정이 더 안정적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수결규칙에 의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해서 집단 성원들이 가지는 신념들의 표출이 제한적이 되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집단결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와 평결의 합치도

배심원들의 평의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평의과정이 평결로 이어진다면 그때의 평결은 증거의 객관적 상태를 밀접히 반영해야 한다.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의 상태는 유죄를 지지하는 증거와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가 모두 강력해서 상충하는 경우, 유죄 혹은 무죄의 한 쪽을 지지하는 증거가 명확하고 강한 경우, 모든 증거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배심원들의 평결이 그러한 증거상태를 밀접하게 반영한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상충하거나, 증거가 모호한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배심단들의 평결이 유죄와 무죄로 크게 양분되어야 할 것이고,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에는 여러 배심단들의 평결이 유죄로 편중되어야 하며, 반면에 무죄증거가 강한 경우에는 여러 배심단들의 평결이 무죄로 편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재판사건에 대한 많은 배심단들의 평결분포가 객관적인 증거상태를 반영하는 정도 혹은 평결분포와 증거상태의 합치도가, 배심원들이 평의를 통하여 증거에 집중해서 평결을 도출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평결분포와 객관적인 증거상태의 합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상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의 증거가치와 증명력이 서로 상충하는가, 편중되었는가, 혹은 모호(희박)한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Kalven와 Zeisel(1966)에 의하면 90%의 사건에서 평의 초기의 개인 배심원 의견분포에서 다수를 이루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결국 만장일치를 이룬다. 소위 '다수효과(majority effect)'로 불리는 이 현상은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현장연구 및 실험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 중의 하나다(Davis et al., 1981; Devine et al., 2001; Hans et al., 2003; Kerr, 1981; McCoun & Kerr, 1988; Sandy & Dillehay, 1995). 평의 전 다수파의 개인의견들이 언제나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배심재판에서 이러한 현상이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최소한 평의 전 개인 배심원들의 의견분포가 해당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Saks와 Marti(1997)는 배심단이 지역사회 시민들 중에서 표집되며 전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결정단위이기 때문에 평결의 "정확성"은 그 평결이 지역사회 전체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수의 모의배심원들이 참여한 실험연구에서 모의배심원들이 평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표명한 유무죄 의견분포를 판단정확성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배심단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들을 개관한 Penrod와 Hastie(1979) 역시 증거상태(evidentiary weight)란, 무선적으로 표집된 배심원이 재판의 증거를 보고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논리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지역사회 혹은 배심원 모집단이 판단하는 증거상태를 "객관적" 증거상태(유무죄 증거가 상충하거나, 유죄 혹은 무죄 증거가 강하거나, 증거가 모호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재판에 배심원 모집단이 모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강력한 증거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모든 증거들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재판에서는 평의 전 개인배심원들의 의견이 유무죄로 크게 나뉘고, 결정을 못하는 배심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이 명백히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일방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평의 전 개인배심원들의 의견도 그것을

반영하여 유죄의견 혹은 무죄의견으로 편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배심원들이 평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표명한 유무죄 의견분포를 객관적 증거상태에 대한 표본 통계로 이용하였다. '객관적' 증거상태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배심단들이 평의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집단적 평결의 분포가 증거상태와 합치하는 정도를 계량하여 결정규칙에 따라 증거와 평결의 합치도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소수 의견에 대한 고려

배심원들이 평의동안 발언한 내용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측면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소수지향가'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광배, 김상준, 이은로, 서혜선, 2005). 예를 들어, 소수파가 무죄의견인 배심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급하게 위협을 받았다는 목격 증언이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지만, 사용한 무기가 과도한 점이 있다." 라는 진술은 쉼표를 기준으로 두 개의 독립적 발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앞부분의 발언은 소수지향가를 가진 발언으로, 뒷부분의 발언은 소수파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분류된 소수지향가 발언의 비율이 평의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면, 다수파 배심원들이 증거를 평가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동안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소수파의 관점을 고려하는 정도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소수파의 경우에는 다수파의 관점에 대비되는 자신의 의견 혹은 중립적 판단기준에 대해 발언하는 정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동안 진술한 발언의 소수지향가가 변화하는 양상이 결정규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소수의견이 고려된 객관적 양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가 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총 640 명의 모의배심원들이 참여한 모의재판 실험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장일치 규칙에 의한 배심단 평결이 다수결 규칙에 의한 배심단 평결보다 안정성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단들이 도출한 판결분포가 다수결 규칙에 비하여 객관적인 증거상태와 더 부합할 것이다. 셋째,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원들이 다수결 규칙의 배심원들보다 소수의 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방 법

예비연구 :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조금씩 변형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험에 이용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증거상태 조작이 의도된 바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총 221명에게 4가지 증거상태가 조작된 사건 기술문을 각각 한 가지씩 읽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판결하게 하였다. 네 가지 증거상태에 대한 사건 기술문은 모두 검찰 측 증인 3명과 변호인 측 증인 3명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증거상태에 따라서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지지하는 정도가 다르도록 조작하였고 평균 860 단어의 길이로 A4 용지 2쪽 정도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의견 분포에서 무죄증거 강함, 유죄증거 강함, 증거가 상충함, 증거가 모호함의 각 증거상태 조건이 확인되어($\chi^2(3)=62.526, p<.01$) 본 연구의 실험자료 자극이 마련되었다.

실험참가자

본 실험의 참가자들은 지방의 한 대학교와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640명으로, 여학생 360명, 남학생 280 명이 8인 배심단 80 개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8세에서 44세의 범위로 평균 21.32세(표준편차 2.30)였다. 여러 강좌와 학내의 안내 광고를 통해 자원자들이 모집되었는데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15,000원씩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실험설계

결정규칙의 효과에 대한 실험은 2(결정규칙 : 만장일치와 다수결 규칙) \times 4(증거상태 : 증거상충, 유죄증거 강함, 무죄증거 강함, 증거 모호)의 집단 간 요인 설계이다. 각 조건에는 각각 10 개씩의 배심단이 무선적으로 배정되었고, 배심단은 각각 8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자료 : 재판 시나리오

실험에는 실제 사건에 기초하여 구성된 사건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사건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집 주방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몇 시간 전에 술집에서 피고인을 면도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순찰 경찰관과 검시관, 술집의 바텐더가 증언하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술집의 종업원과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이 증언하였다. 증거상태의 조건에 따라 각 증인의 증언 내용을 각색하여 전체적인 증거상태가 4가지로 체계적으로 조작되었다(표 1 참조).

표 1. 증거상태의 조작

증거상태	증언 초점
증거상충	경찰, 검시관 바텐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여종업원,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의한 정당방위 요건을 증언
무죄증거 강함	경찰과 검시관은 유죄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의 무죄를 지지하는 내용들을 증언
유죄증거 강함	경찰, 검시관, 바텐더, 여종업원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증언을 하고 피고인의 친구는 현장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만 정당방위 주장
증거모호	증인들 모두 현장을 보지 못하거나 증거가 유무죄 중 어느 편을 지지하지 않고 피고인만 정당방위 주장

절차

배심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된 배심원들은 각 배심단별로 실험실에 집결하여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사건에 대한 판사의 배심원 지침을 읽은 후 개인적으로 배포된 사건 기술지를 읽었다. 사건 내용을 읽은 후에는 증거에 대한 평가와 개인 판단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의에 앞서 평의를 안내하는 두 번째 배심원 지침을 읽은 후 평의를 시작하였다. 전체 평의과정은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화되었다. 평의시간에 대한 제한이 모의배심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평의가 1시간 30분을 넘겨서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험자가 실험실에 들어가서 평의를 마무리하고 평결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배심단이 평결을 내리거나 평결불능을 선언한 후에는 평의에 대한 평가와 개인적 판단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참가비를 지급하고 모의 배심단을 해산하였다.

결 과

성별효과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각 배심단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배심단별로 남녀 성비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배심원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배심단의 성비구성에 따라 최종평결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배심원의 성별이나 배심단의 성비구성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평의 참여 양상이 다를 경우,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에서 이 효과를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별과 성비구성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여자 배심원과 남자 배심원들이 평의 전과 후의 유무죄 판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배심단 성비에 따라서 평의시간이나 최종평결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 자료로 사용된 사건 특성이 성별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사건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평의 참여 면에서는 여자 배심원들(M=55.11)보다 남자 배심원들이(M=70.80)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발언하여(F(1, 629)=7.752, p<.01) 평의 참여에 대한 분석에서는 배심단의 성비를 통제해야 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최종평결

배심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 최종평결이 표 2에 결정규칙과 증거상태별로 제시되었다. 증거가 상충되는 사건에서는 다수결규칙에서 유죄판결의 비율이 80%였고 만장일치규칙에서는 70%의 배심단이 최종평결을 내리지 못하여 결정규칙에 따라 최종평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0.933, p<.01$). 한편 무죄증거가 강한 사건에서는 16개 배심단에서 무죄평결을 하였고 1개의 다수결규칙 배심단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3개의 만장일치규칙 배심단이 평결불능이 되어 결정규칙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죄증거가 강한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17개의 배심단이 유죄판결을 하고, 1개의 다수결규칙 배심단이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2개의 만장일치규칙 배심단이 평결불능이 되어 결정규칙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표 2. 배심단의 최종 평결과 우연적 확률

증거상태	결정 규칙						
	만장일치				다수결		
	무죄	유죄	평결불능	우연확률 ¹	무죄	유죄	우연확률 ²
증거상충	1	2	7	0.006	2	8	0.044
무죄증거 강	7	0	3	0.002	9	1	0.010
유죄증거 강	0	8	2	0.001	1	9	0.010
증거모호	6	0	4	0.003	8	2	0.044
전 체	14	10	16	0.010	20	20	0.125

1. 무죄평결, 유죄평결, 평결불능이 이루어질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다항확률(multinomial probability)
2. 무죄평결, 유죄평결이 이루어질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이항확률(binomial probability)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가 모호한 사건에서는 결정규칙에 따라 최종평결이 차이를 보여서($\chi^2(2)=6.286, p<.05$) 만장일치규칙에서 평결불능이 4개, 다수결규칙에서 유죄평결을 내린 배심단이 2개 있었고 무죄판결은 14개 배심단에서 결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유죄평결을 내린 배심단은 만장일치 규칙에서 10개, 다수결 규칙에서 20개로 다수결 규칙에서 2배의 유죄판결 비율을 보였다. 평결불능은 만장일치규칙에서만 발생하여 40개의 만장일치규칙 배심단 중 40%가 최종적으로 전원이 합의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무죄평결은 다수결규칙 조건에서 20개, 만장일치규칙조건에서 14개 배심단에서 내려져서 다수결규칙이 무죄판결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호한 사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배심단들이 평결불능이 되는 경향이 크고, 다수결 배심단들은 증거가 상충될 경우 만장일치 규칙에 비해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다항확률과 이항확률은 각 조건에서 배심단들이 평결분포가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다(만장일치조건에서는 다항확률, 다수결조건에서는 이항확률). 예를 들어 증거상충 조건의 만장일치규칙 배심단에서 평결분포가(1,2,7)의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은 0.006이다. 반면, 증거상충 조건의 다수결규칙 배심단에서 우연에 의해서(2,8)의 평결분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0.044이다. 따라서(2,8) 평결분포는 (1,2,7)의 평결분포에 비하여 우연성이 더 크고 정보적 의미가 더 적다.

평결의 안정성

네 가지의 증거상태 조건에서 각각 10개의 배심단이 내린 평결에서 무죄평결, 유죄평결과 평결불능비율을 정보 엔트로피 함수에 대입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가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었는데 모든 증거상태 조건에서 만장일치규칙의 엔트로피 지수들이 더 낮아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배심단들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더 동일한 평결을 안정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상태와 평결의 합치도

배심단이 내린 평결이 객관적인 증거상태(상충, 무죄강,

표 3. 배심단의 평결 엔트로피

증거상태	결정규칙	
	만장일치	다수결
증거상충	0.7521	0.8231
무죄증거 강	0.6400	0.6945
유죄증거 강	0.5746	0.6945
증거모호	0.6801	0.8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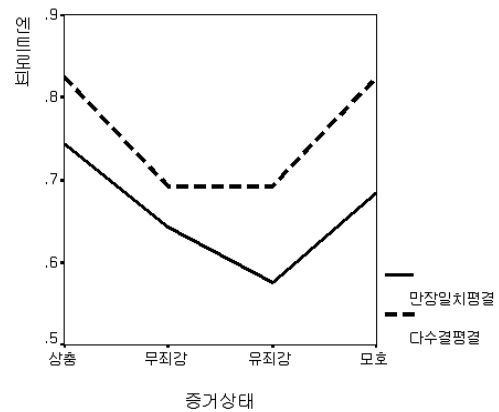


그림 1. 배심단의 평결 엔트로피

표 4. 모든 모의배심원들의 평의전 개인 판단

증거상태	평결			
	무죄	유죄	미결정	전체
증거상충	45(28.1%)	50(31.3%)	65(40.6%)	160(100%)
무죄증거 강	99(61.9%)	16(10.0%)	45(28.1%)	160(100%)
유죄증거 강	17(10.7%)	100(62.9%)	42(26.4%)	159(100%)
증거모호	71(44.7%)	28(17.6%)	60(37.7%)	159(100%)

유죄강, 모호)와 일치하는 정도가 결정규칙에 따라 달라 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모의배심원들의 평의전 개인판단의 분포를 파악하여 객관적 증거상태를 계량화하였다(표 4 참조). 증거가 상충하도록 조작된 조건에서는 전체 160명의 배심원들 중 28.1%가 평의전에 무죄의견, 31.3%가 유죄의견, 40.6%가 “모르겠다”로서 이 사건의 증거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한편 무죄증거가 강하게 조작된 조건에서는 61.9%의 배심원이 평의전에 무죄라는 판단을 하였고, 유 죄증거가 강하게 조작된 조건에서는 62.9%가 유죄판단을

표 5. 평결과 증거상태의 합치도

	만장일치 조건			다수결 조건			다수결 조건 (평결불능 불가능)		
	x^2	df	p	x^2	df	p	x^2	df	p
증거상충	3.60	2	0.17	12.07	2	0.00	2.93	1	0.08
무죄 강	1.12	2	0.57	4.07	2	0.13	0.13	1	0.72
유죄 강	1.70	2	0.43	3.77	2	0.15	0.13	1	0.72
증거모호	2.21	2	0.33	6.58	2	0.04	0.33	1	0.57

하여 각각의 증거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증거가 모호하도록 조작된 조건에서는 44.7%의 모의배심원들이 무죄의견을 가졌고 37.7%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못하여 증거가 모호한 상태임을 반영한다.

평의전 개인판단의 분포를 예측치로 하고, 배심단의 집단적인 평결의 분포를 관찰치로 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하면 만장일치조건에서 증거가 상충할 때는 예측비율이 0.281, 0.313, 0.406(표 4)이고, 이에 해당하는 관찰비율이 0.1, 0.2, 0.7(표 2)이므로, $x^2=3.60$ 이고, 이 카이제곱은 $df=2$ 에서 유의미하지 않다($p=0.17$). 즉, 증거가 상충될 때 만장일치규칙을 사용하면 배심단의 평결분포가 객관적인 증거상태를 잘 반영한다. 다수결규칙에서도 평결불능이 가능하다고 보면, 만장일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측비율을 사용해서 카이제곱검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결규칙조건에서 증거가 상충될 때 예측비율이 0.281, 0.313, 0.406이고, 이에 해당하는 관찰비율이 0.2, 0.8, 0.0이므로 $x^2=12.07$ 이고, 이 카이제곱은 $df=2$ 에서 유의미하다($p=0.00$). 이런 방식으로 모든 증거상태조건에서 카이제곱검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를 보면 증거가 상충할 때와 증거가 모호할 때 다수결규칙에서의 평결은 증거상태와 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다수결규칙에서 평결불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면(표 5의 오른쪽 칸), 증거가 상충할 때만 다수결규칙조건에서 평결이 증거상태와 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된다 ($p<0.1$).

소수의견에 대한 고려

각 배심단의 녹화된 평의를 축어록으로 전사하여 (verbatim transcript) 박광배 등(2005)의 코딩 체계에 따라 훈련받은 3명의 독립적인 분류자(coder)들이 내용분

석을 하였다. 배심원들의 진술을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갖는 어절인 발언의 단위로 분류하여 평정자간 일치도를 추정 한 Cronbach-a는 0.99로 높게 산출되었다. 이 Cronbach-a는 80개 배심단 중 무작위로 선택된 4개의 배심단 평의에서 총 2536개의 발언에 대해 각 발언자로 코딩된 배심원 번호에 대해 채점자를 마치 척도의 문항처럼 취급하여 채점자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 단계로 배심원들의 발언이 평의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인지, 혹은 평결을 도출하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사교적 발언인지를 구분한 발언주제(subject) 분류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는(Cronbach-a) 0.70이었다. 이 Cronbach-a는 120개 배심단 중 무작위로 선택된 5개의 배심단 평의에서 총 2868개의 발언에 대한 분류의 신뢰도로 산출된 것이다. 이렇게 분류된 평결주제 발언 중 다시 구체적인 발언의 논제(topic)를 분류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0.84이었다. 이어서 평결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로 분류된 발언들 중 소수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발언, 그리고 판단이나 결정을 위한 중립적 발언들을 ‘소수지향가’ 발언으로 지칭하고, 다수파의 의견에 대비되는 발언으로 분류하였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중립적인 발언은 모든 배심단에서 소수지향가로 분류되었는데 예를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살인죄나 정당방위에 대한 법만 보더라도 살인죄는 일단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유무죄 판단을 위한 법원칙 등을 발언한 경우에도 다수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발언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소수지향가로 분류되었다. 소수 지향가를 분류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93이었다.

일부 배심단들의 평의 녹취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처음부터 배심원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하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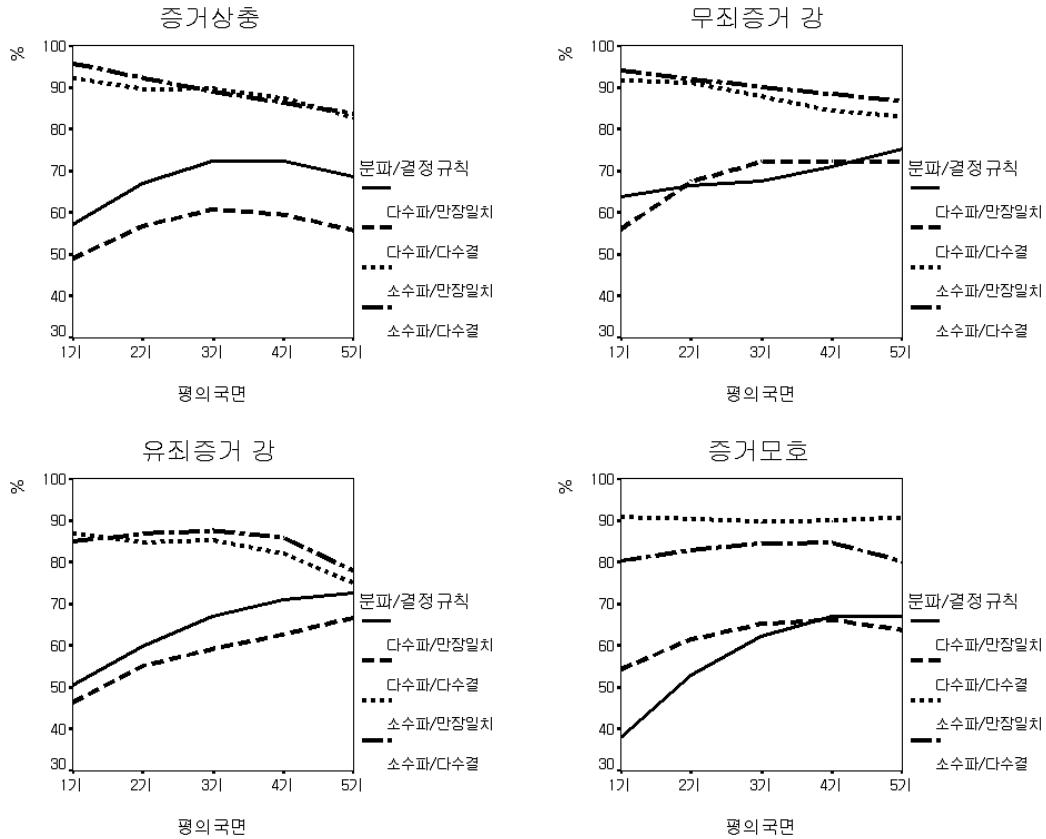


그림 2. 증거상태별로 평의시기에 따른 소수지향가의 변화

차이 자체가 없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분류되지 않는 배심단과 평의시간이 짧아서 의견 차이를 다루는 충분한 과정이 없이 평의가 종결된 경우이다. 즉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경우 모든 배심원들이 이미 의견이 다 일치되어 있던 배심단 4개와 평의시간이 전체 평의시간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 짧았던 배심단 7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배심원들이 평의동안 발언한 내용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소수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소수지향가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으로 분류한 후 소수지향가가 평의국면(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다수파 배심원들의 소수지향가 변화를 표시한 곡선의 전체적 높이는 다수파가 소수 배심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발언을 한 전반적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다수파 배

심원들에게서 그래프 곡선의 높이가 높으면 소수의 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소수파 배심원들에게서 소수지향가 곡선의 높이가 높으면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주장한 것이다. 한편 그래프의 곡률은 평의시기에 따라 소수지향가의 비율이 변동하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소수의견에 대한 고려 혹은 소수파의 자기 의견 주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증거가 상충되는 사건을 판단한 다수파 배심원들은 다수결규칙에서보다 만장일치규칙에서 소수의견을 검토하는 발언을 더 많이 하였다($t(8)=3.02, p<.05$). 유죄증거가 강한 사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만장일치규칙의 다수파 배심원들이 소수의견을 지지하는 발언을 더 많이 해서 소수파 배심원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필요한 중립적 기준들을 더 많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증거가 강한 사건에서는 다수결규칙과 만장일치규칙의 다수와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한 양이나 그 변화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만장일치규칙의 배심원들이 평의 후반으로 갈수록 소수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증거가 모호한 사건에서도 다수와 의견의 배심원들이 평의가 진행될수록 다수결규칙에서보다 만장일치규칙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더 높은 비율로 고려하였다.

소수와 배심원들의 경우에는 각 증거상태 조건에서 결정규칙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증거상태에 따라 만장일치규칙의 소수와 배심원들과 다수결규칙의 소수와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정도가 약간씩 차이를 보였지만 특정한 경향성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고려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서 평의 후 배심원들이 설문 응답에서 소수의견이 고려된 정도를 평가한 내용이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의 배심단에서 서로 다르지 비교하였다. 평의를 모두 마치고 최종 평결을 내린 후 “평의동안 배심원들 중 소수의견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고려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배심원들은 “전혀 없었다(1)”에서 “무척 많았다(7)”의 범위로 응답하였다. 증거상태와 결정규칙에 따라 소수의견을 고려한 정도를 지각한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원들이($M=4.98$) 다수결 규칙의 배심원들보다($M=4.75$) 소수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F(1,631)=4.045, 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으로 구성된 공적집단인 배심단에서 만장일치 혹은 다수결 규칙이 적용될 경우 최종평결의 안정성이 달라지는지를 탐색하였는데, 이는 현실의 맥락 속에서 집단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평결의 안정성은 사법적 결정에서 정확한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법제도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같은 사건을 판단한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를 평결의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배심단의 결정규칙에 따라 최종평

결의 안정성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안정성이 달라지는 경우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결이 증거상태와 부합하는 정도, 그리고 평의동안 소수의 의견을 고려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모든 증거상태 조건에서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들이 내린 평결이 다수결규칙에 비하여 더 낮은 엔트로피를 보여서 만장일치규칙의 평결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엔트로피 지수는 불확실성의 지표이므로 배심단에서 도출된 실제 평결분포의 엔트로피 지수가 높을 경우 그 평결분포가 우연히 발생한 것일 확률 또한 높다. 이는 표 2에 제시된 각 조건별 평결분포의 우연확률에서 확인되는데, 다수결규칙의 평결이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만장일치규칙에서의 그 확률에 비해 더 크다. 예를 들어, 증거가 상충하는 경우에 만장일치규칙 조건에서 나타난 평결분포(무죄 1개, 유죄 2개, 평결불능 7개)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은 0.006인 반면, 다수결규칙 조건에서 나타난 평결분포(무죄 2개, 유죄 8개)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은 0.044이다. 즉, 증거가 상충할 때 다수결규칙에 의한 평결분포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이 만장일치규칙에 의한 평결분포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보다 7배 이상 더 크다. 우연확률은 정보가치의 역 개념이다. 따라서 다수결규칙에 의한 평결의 우연확률이 만장일치규칙에 의한 평결의 우연확률보다 7배 더 큰 경우에는 전자의 정보가치가 후자의 정보가치보다 7배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 이 정보가치의 차이가 증거가 상충할 때 결정규칙에 따른 평결분포의 엔트로피 차이가 가지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증거가 상충할 때 만장일치규칙에 의한 평결의 엔트로피는 0.7521이고, 다수결규칙에 의한 평결의 엔트로피는 0.8231인데, 엔트로피의 숫자적 차이가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의미하는 정보가치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다. 물론 본 연구의 실험 절차에서 배심단이 8인의 짝수로 구성되고 다수결 규칙의 배심원들도 평결불능이 될 경우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다수결 규칙의 배심단에서도 평결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엔트로피 지수나 우연확률이 다수결 규칙 조건에서도 3가지의 평결안(무죄, 유죄, 평결불능)에 대하여 계산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출된 평결 결정에 대하여 안정성과 정보적 가치를 비교하였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한국 참여재판 제도에서는 배심단이 홀수의 인원
로 구성되어 다수결 규칙에서는 구조적으로 평결불능이
발생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엔트로피 수식은 평결안의 개
수가 다른 엔트로피 지수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표준화한
것이다. 만장일치 규칙에서 배심단들이 도출한 평결안이
무죄, 유죄, 평결불능일 때 이 세 평결의 비율이 모두 같
아 엔트로피가 최대가 될 경우는 표준 엔트로피가 1이 되
지만, 모든 배심단들이 동일한 평결을 내리서 엔트로피가
최소가 될 경우 표준 엔트로피는 0.33이 된다. 무죄와 유
죄의 두 가지 평결안이 도출될 수 있는 조건에서 모든 배
심단들이 동일한 평결을 내린 경우에도 역시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지만 이때의 표준 엔트로피는 0.50이 된다. 이와
같이 발생가능한 평결의 범주가 3개일 때(만장일치규칙)
최소엔트로피가 발생가능한 평결의 범주가 2개일 때(다수
결규칙)의 최소엔트로피보다 낮은 이유는 가능한 평결의
범주가 많을수록 평결이 내포하는 정보의 양이 본질적으
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와 “아니오”인 경우보다 더 구체적일 때
더 많은 정보를 함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평결불능이
가능한 만장일치규칙은 다수결규칙보다 재판사건에 대해
서 본질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정보적
으로 더 안정적인 결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참
여재판 제도에서 2단계 결정규칙인 과반수 다수결 규칙은
5, 7, 혹은 9인의 배심단이 결정을 내리므로 어떤 경우에
든 유무죄 결정이 내려지므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들여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평결불능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법적 안정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와 같이 정보 엔트로피 개념으로 보면 평결의 안정
성은 구조적으로 만장일치 규칙에서 더 높다. 어떤 평결
이든 결정되는 것이 피상적으로 안정적인 사법체계로 보
여질 수 있지만,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에 합치하는 정
보적으로 안정적인 결정은 만장일치 규칙을 통해서 더 기
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엔트로피지수가 “안정성” 지수로 산출되
었는데, 그때의 안정성이란 단지 비율의 편중성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발생시키는 내재적 요인의 안정성
을 의미할 수 있다. 즉,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상을 유발하는 메카니즘의 속성을 기술하는 개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들 중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만장일치규칙 조건에서
는 본 연구의 모의실험 정도의 평의시간이 주어졌을 때
실험자료의 사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내
리지 못하는 것이 배심단 의사결정의 안정된 메카니즘일
수 있다. 배심원 지침으로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판단기준은 평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무죄로 추
정된다는 사법원칙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
심의 여지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해야 한
다는 입증기준이다. 그런데 특히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호
한 경우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상호 모순되거나 빈약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전제로 증거들이 입증기준에 비추어 어
떤 위치인지 결론짓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에서 다수결규칙의 경우에는 배심원들 중 일부 다수의 합
의로 다소 미숙한 판단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배심단의 평
결로 결정되어 여러 배심단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평결이 불안정할 수 있다. 반면에 만장
일치규칙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 주
어진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여러 배심단
에서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들이 내린 평결이 더 안정
적인 특성을 보인 점은, 집단의사결정에 내재하는 결정의
메카니즘이 만장일치규칙에서 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 결
론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모순되는 판단과제
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의 안정성이 결정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판단기준의 엄격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입증기준이 매우 엄격한
형사적 판단과 그 보다 느슨한 민사적 판단과제, 일상적
판단과제 등에 대하여 집단의사결정의 안정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원들의 상
호작용의 정도를 조작하여 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
는 경우와 제한적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경우에 결정의 안
정성을 비교해본다면, 본 연구의 만장일치규칙 배심단들
이 보인 더 높은 평결 안정성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가 상충하는 조건과 증거가 모호한 조건의 경우에,
만장일치규칙의 조건에서 배심단들의 평결이 다수결규칙
조건보다 사건의 증거상태와 더 합치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Saks과 Marti(1997)의 경우에는 평의전 개인판단분포를 “정확성”의 기준(standard)으로 간주하였지만, 평의전 개인판단분포는 정확성 기준이라기보다는 Penrod와 Hastie(1979)의 논의에서와 같이 오히려 객관적 증거상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평의전 다수파의 개인의견들이 언제나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배심재판에서 다수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은 평의전 개인 배심원들의 의견분포가 해당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소한 증거가 상충할 때 다수결규칙을 사용하면 평결이 증거의 상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평결이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요인들은 배심단이 달라지면 함께 달라진다. 따라서 다수결규칙에 의한 평결이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보다 덜 안정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증거가 상충할 때 다수결규칙조건에서 최종평결이 증거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어 최종평결이 증거 상태와 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거가 상충하는 경우와 증거가 모호한 사건은 증거가 무죄나 유죄 어느 한쪽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법적 판단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경우이다. 배심원들의 설문응답에서도 증거가 상충하는 조건에서 평의전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고 ($F(3,631)=8.928, p<.01$), 집단 결정 수준에서도 평결을 도출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다($M=3.47$). 즉 유죄 증거가 강한 조건이나($M=4.84$) 무죄증거가 강한 조건($M=3.87$)에 비해 증거가 상충하는 조건에서 평결도출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 지각하였다($F(3, 630)=17.019, p<.01$) 따라서 만장일치규칙이 증거상태에 더 합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히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결정규칙의 효과가 확인되는 것은 주로 증거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호한 경우이다(Devine et al., 2001). 다수결규칙의 배심단들도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상태에 부합하는 평결을 내렸는데, 특히 증거가 상충되는 경우와 모호한 경우에는 만장일치 규칙에서의 평결이 증거상태와 더 합치하여 결정의 타당도가 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수결규칙의 배심단에 비해서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에서 평의동안 다수와 배심원들이 소수와 배심원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한 현상은 관용계약 이론(Crano & Chen, 1998)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만장일치 혹은 단결이 집단의 내부에서 생성된 규범일 때는 다수집단에 의한 설득과정 없이 소수집단의 의견이 단순히 무시되거나 억압되어 집단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Janis, 1982; Turner & Pratkanis, 1999). 반면에 만장일치가 집단의 외부에서 부과된 규범일 때는 집단 내에서 관용계약 현상이 나타나서 다수와 성원들이 자신들이 공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소수집단의 성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소수집단의 영향이 더 활성화된다. 그 이유는 외부규범으로서 만장일치규칙에서는 다수결규칙에 비해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크고,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의 의견에 대하여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다수결규칙이 적용될 때보다 만장일치규칙이 적용될 때 더 쉽게 나타나는 관용계약 현상은 집단 내에서 모든 신념들을 펼쳐 놓게 만들어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 의해 설득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집단 내에서 모든 신념들이 검토될 수 있게 하는 관용계약 과정에 의하여 만장일치 규칙에 의한 집단결정은 보다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수결규칙에서는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하므로 관용계약 과정이 약화되고, 소수의견이 검토될 기회가 더 적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집단결정이 도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결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배심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배심단의 최종평결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는 증거강도에 따라 확신이 차이를 보였다($F(3,504)=5.103, p<.01$). 유죄 증거가 강한 사건을 판단한 배심원들이 최종평결에 가장 강한 확신을 보였고($M=5.38$) 증거가 희박한 사건을 평결한 배심원들이 배심단의 결정에 대해 가장 낮은 확신을 나타냈다($M=4.73$). 결정규칙의 효과 면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경합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증거강도 조건에서 만장일치 규칙으로 결정을 내린 배심원들이 배심단의 최종평결에 대해 더 강하게 확신했다. 즉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한 평결불능이 많았던 증거 경합 사건 이외에는 배심원들도 만장일치 규칙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스스로 배심단 평결에 대해 더 확신했으며 평결의 안정성이 주관적 평가에서도 확인되었다.

평의내용을 내용분석하여 배심단 안에서 소수지향기가 평의국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 다수와 배심원들의 소수지향기 곡선이 60~80% 범위의 높이를 보이는 이유는, 소수지향기로 분류된 발언들 속에는 다수와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소수와 배심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칙이나 판단기준들에 대한 중립적 발언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수와 배심원들의 소수지향기 곡선이 전반적으로 곡선이 90% 대의 높은 위치를 보인 것 또한 소수파들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지속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소수와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판단원칙 등에 대한 중립적 논의도 활발히 하였음을 반영한다. 만장일치규칙에서 다수와 배심원들이 소수의 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한 현상은, 객관적인 발언의 소수지향기 분석과 배심원들의 주관적인 평가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재판 중에 제시된 증거의 가치나 증명력에 대한 소수의 관점이나 무죄에 대한 견해들을 더 많이 고려했음수록 배심단의 판단이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뤄졌을 것이므로 만장일치규칙 조건에서 배심단들의 평결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만장일치 규칙에서 소수의견을 더 충분히 고려하는 평의과정의 특성때문에 더 안정된 평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론은 개념적 차원에서의 논의일 뿐, 평결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적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평결의 안정성, 평결과 증거상태의 합치도, 소수의견에 대한 고려 정도가 각각 다양한 지표들로 파악되어 직접적인 매개분석 등의 검증이 불가능한 점은 향후 방법론적으로 하나의 이론 모형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자료를 해석해볼 때, 평의동안 소수의견을 지닌 배심원들이 더 충분히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수와 배심

원들이 소수와 배심원들의 관점과 견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증거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더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더 풍부하게 검토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소수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와 배심원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하여 평결을 한 배심단들에 비해 더 일관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럼으로써 더 안정된 평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심단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영향력이나 압력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데, 소수파의 의견이 더 충분히 고려되면 다수파의 일방적 영향력이나 동조, 집단극화나 집단사고와 같은 부정적 집단과정이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파의 관점이 평의동안 더 충분히 고려됨으로써 제시된 증거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다수결 규칙에서 의견 정족수에 더 쉽게 도달함으로써 최종결정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 다수파의 견해가 더 엄격하게 검증되어 더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거나 소수파의 검증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평결불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변화나 혁신이 가능한 것은 소수파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관철되기 때문인데 소수파의 견해가 옳고 설득력이 있으며 진지할 경우 다수파는 소수파의 견해와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판단이 변화되기도 한다(Moscovici, 1980). 배심단에서 소수파의 견해가 더 충분히 검토되는 현상은 다수파의 압력이나 다수파가 주도하는 집단사고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타당할 수도 있는 소수파의 관점이 증거평가의 국면과 최종결정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배심단 안에서 소수파의 의견이 더 충분히 검토되는 이러한 과정은 앞절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사건의 증거상태를 반영하는 정보적 안정성이 구현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타당한 결정의 전제조건을 구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판단 자료로 사용된 사건 자극은 살인 사건으로 결정규칙이 배심단의 최종평결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 상해사건이나 성폭행사건 등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배심단의 의사결정에서 결정규칙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된 사건 특성 변인은 본 연구에서 통제된 증거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의 표본을

통해서 결정규칙에 대하여 조절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 특성 변인들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 재판 전 여론 보도, 과학적 전문 증거 등을 연구 변인으로 포함하는 설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적 한계로 모의배심원들이 대학생이며 판단과제가 문서자료 매체였다는 점에서 생태 타당도 (ecological validity)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글로 쓰여진 사건 기술지는 동영상 매체나 모의재판 실연, 혹은 실제 재판에 비하여 사법적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자극으로서 현실성이 더 낮아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Bornstein(1999)은 모의배심단 실험연구에 대한 생태타당도를 분석하면서 113개의 연구 중 학생이 모의배심원으로 참가한 경우가 65%였고, 사건 기술지를 자극으로 사용한 경우가 55%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과 일반인 실험참가자의 평결을 비교한 26 개의 연구와, 기술지나 녹음 자료, 혹은 녹화 동영상 매체, 모의재판 실연 등의 자극 매체를 비교한 11 개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의배심원이 학생인 경우와 일반인인 경우, 그리고 재판 자극 매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차이가 파악되지 않았다. 실제 상황에서 배심단의 의사결정은 피고인의 운명을 좌우하며 사회의 범죄 통제 혹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배심원들의 동기와 긴장감이 매우 높고, 복잡한 재판에 참여하여 많은 증거를 긴 시간 동안 보고 평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런 점에서 모의재판 실험 연구의 결과를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지만(Chesterman, Chan, & Hampton, 2000), 혼입변인들을 통제하고 인과관계에 관심을 두는 경우 혹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평결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평의 동안 소수의견을 고려한 객관적 양상 등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연구가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Bornstein(1999)의 개관연구에서 대학생과 일반인 표본, 사건 기술지와 동영상, 모의재판 실연 등의 매체 차이로 연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방법적 한계가 본질적으로 연구의 생태 타당도를 위협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앞으로의 배심단 연구에서 재판 실연이나 동영상 등의 자극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생태 타당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모의 배심단 실험연구로서, 2008년 새롭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발전에 시사점이 있는 법심리학적 실증 연구 자료를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사회심리학적으로 결정규칙과 같은 제도 절차 혹은 외부에서 주어질 규범이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단에서는 다수결 규칙의 배심단과 차이가 나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고 또한 그런 집단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평결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규칙이라는 절차 조건에 따라 배심평의와 평결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의 조건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박광배, 김상준, 이은로, 서혜선 (2005).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학회지*, 19(3), 1-21.
- 박광배, 이은로 (2006).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학회지*, 20(1), 1-19.
- 이은로, 박광배 (2006).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형사정책*, 18(2), 459-500.
- Abramson, J. (1994). *We, the jury: The jury system and the ideal of democracy*. New York: Basic Books.
-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 In H. Guetzkow(ed.) *Groups, leadership and men*. Pittsburgh, PA: Carnegie Press.
- Attneave, F. (1959).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heory to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ron, R. S., & Kerr, N. L. (2003). *Group process, group decision, group ac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ornstein, B. H. (1999). The ecological validity of jury simulations : Is the jury still out? *Law and human Behavior*, 23(1), 75-91.
- Bove III, E. J. (2008). Preserving the value of unanimous criminal jury verdicts in anti-deadlock instructions. *The Georgetown Law Journal*, 97, 251-287.
- Call, J. A. (1987). The psychology of jury deliberations. *Texas Bar Journal*, 50(June), 590-595.
- Chesterman, M., Chan, J., & Hampton, S. (2000). Managing prejudicial publicity : An empirical study of criminal jury trials in New South Wales, Law and Justice Foundation of NSW, Sydney.
- Crano, W. D., & Chen, X. (1998). The leniency contract and persistence of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37-1450.
- Janis, I. L. (1982). *Groupthink : Psychological studies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Boston, MA : Houghton Mifflin Company.
- Davis, J. H. (1973). Group decision and social interaction : A theory of social decision schemes. *Psychological Review*, 80, 97-125.
- Davis, J. H., Au, W. T., Hulbert, L., & Chen, X. (1997). Effects of group size and procedural influence on consensual judgment of quantity : The example of damage awards and mock civil ju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03-718.
- Davis, J. H., Kerr, N. L., Atkin, R. S., Holt, R., & Meek, D. (1975). The decision processes of 6- and 12-person mock juries assigned unanimous and two-thirds majority ru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4.
- Davis, J. H., Holt, R. W., Spitzer, C. E., & Stasser, G. (1981). The effects of consensus requirements and multiple decisions on mock juror verdict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1-15.
- Devine, D. J., Clayton, L. D., Dunford, B. D., Seying, R., & Pryce, J. (2001). Jury decision making-45 years of empirical research on deliberating group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7(3), 622-727.
- Diamond, S. S., Rose, M. R., & Murphy, B. (2006). Revisiting the unanimity requirement : The behavior of the non-unanimous civil jury.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0(1), 201-230.
- Foss, R. D. (1981). Structural effects in simulated jury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055-1062.
- Glasser, M. H. (1997). Letting the supermajority rule : Nonunanimous jury verdicts in criminal trials.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1997, Vol.24, 659-677.
- Hans, V., Hannaford-Agor, P., Mott, N., & Munsterman, T. (2000). The hung jury : The American jury's insights and contemporary understanding. *Criminal Law Bulletin*, 1, 9.
- Hastie, R., & Kameda, T. (2005). The robust beauty of majority rules in group decisions. *Psychological Review*, 112(2), 494-508.
- Hastie, R., Penrod, S. D., & Pennington, N. (1983). *Inside the jur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ling, C. K., Brotzman, E., Dalrymple, S., Graves, N., & Pierce, C. M. (1966). An experimental study in nurse-physician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43(2), 171-180.
- Janis, I. L. (1982). *Groupthink : Psychological studies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Boston, MA : Houghton Mifflin Company.
- Johnson v. Louisiana, 406 U.S. (1972).
- Kalven, H., & Zeisel, H. (1966). *The American ju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meda, T. (1991). Procedural influence in small-group decision making : Deliberation style and assigned decision ru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45-256.
- Kaplan, M. F., & Miller, C. E. (1987). Group decision making and normative versus informational influence : Effects of type of issue and assigned decision

- ru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06-313.
- Kerr, N. L. (1981). Social transition schemes : Charting the group's road to 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84-702.
- Kerr, N. L., Atkin, R. S., Stasser, G., Meek, D., Holt, R. W., & Davis, J. H. (1976).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 Effects of concept definition and assigned decision rule on the judgments of mock jur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282-294.
- Kerr, N. L., & MacCoun, R. J. (1985). The effects of jury size and polling method on the process and product of jury delib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349-363.
- Kerr, N. L., MacCoun, R. J., & Kramer, G. P. (1996). Bias in judgment : Comparing individual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3(4), 687-719.
- Leib, E. J. (2006). Supermajoritarianism and the American criminal jury. *Hastings Const. Law Quarterly*, 141, 170.
- Lloyd-Bostock, S., & Thomas, C. (2000). The continuing decline of the English jury. In *World Jury Syste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acCoun, R. J. (1989, June). Experimental research on jury decision-making. *Science*, 244, 1046-1050.
- MacCoun, R. J., & Kerr, N. L. (1988). Asymmetric influence in mock jury deliberation : Jurors' bias for len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1-33.
- MacCoun, R. J., & Tyler, T. R. (1988). The basis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 criminal jury : Procedural fairness, accuracy, and efficiency. *12 Law & Human Behavior*, 333, 337-340.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 Milgram, S. (1974). *Obedience to Authority : An Experimental View*. New York : Harper and Row.
- Miller, C. E. (1985). Group decision making under majority and unanimous decision ru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1), 51-61.
- Moscovici, S. (1980). Toward a theory of conversion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New York : Academic Press.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02). Evaluation of Hung Juries in Bronx County, New York,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Maricopa County, Arizona, and Washington, D. C. 2000-2001.
- Nemeth, C. (1977). Interactions between jurors as a function of majority vs. unanimity decision ru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7, 38-56.
- NSW Law Reform Commission (2005). *Report 111 Majority Verdicts*. Sydney.
- Penrod, S., & Hastie, R. (1979). Models of jury decision making :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79, 86(3), 462-492.
- Postems, T., Spears, R., & Cihangir, S. (2001). Quality of decision making and group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1, 80(6), 918-930.
- Saks, M. J. (1997). What do Jury experiments tell us about how juries(should) make decisions? *Southern California Interdisciplinary Law Journal*, 6, 1-53.
- Saks, M. J., & Marti, M. W. (1997). A meta-nanlysis of the effects of jury size. *Law and Human Behavior*, 21(5), 451-467.
- Sandys, M., & Dillehay, R. C. (1995). First-ballot votes, predeboration dispositions, and final verdicts in jury trials. *Law and Human Behavior*, 19, 175-195.
- Shannon, C. E. (1949).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Vol. 27, 623-656.
- Shannon, C. E., & Weaver, W. (1963).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 Univ. of Illinois Press.
- Turner, M. E., & Pratkanis, A. R. (1999). Theoretical per-

- spectives on groupthink : A twenty-fifth anniversary appraisal. Guest editoria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3, 103-104.
- Vidmar, N. (2000).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common law jury. In *World Jury Syste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Zimbardo, P. G. (1972). Pathology of imprisonment. *Society*, 9, 4-8.

An Effect of Decision Rule on the Stability of Mock Juries' Verdicts

Eunro Lee Kwang B.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fferent decision rules as external norms imposed on the decision group affect the behavior and the final decision of the group differently. Specifical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stability of jury verdicts as the degree to which different juries render the same verdict for the same case, the stability of mock juries'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compared with tha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Eighty mock juries of 8 members for each deliberated and rendered verdicts for a murder case in which the defendant pleaded "not guilty" for the reason of self-defense. Half (40) of the juries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unanimity rule and the other half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he juries under each of the decision rules were again randomly assigned into four conditions of evidence state : conflicting, exonerating, incriminating, and vague evidence states. The distribution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yielded lower information entropy than the distribution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suggesting that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may be more stable than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wo reasons for the higher stability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suggested :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compared to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correspond more closely to the objective state of the evidence specially in the conflicting and vague evidence condition; jurors deliberating under the unanimity rule are more open to the minority perspectives as predicted by the theory of leniency contract (Crano & Chen, 1998).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the trials by lay participation implemented in Korea were discussed.

Keywords: Decision rule; Jury; Stability of verdicts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2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17일